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9월 7일

제14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 임

다. 주요내용

- 통·리장의 정수 조정(별표)
 - － 587명 통·리장 → 595명 통·리장으로 조정 (통·리장 수 8명↑)
 - 고아읍 중 1명 : 괴평4리 무지개아파트 (38통)

- 도량동 중 1명 : 뜨란채 아파트 분통 (37통)
- 선주원남동 중 1명 : 금오산어울림 아파트 신축 (46통)
- 인동동 중 2명 : 서한이다음아파트 분통 (61 ~ 62통)
- 양포동 중 3명 : 우미린 아파트 신축 (41 ~ 43통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“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”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87명에서 고아읍 중 1명, 도량동 중 1명, 선주원남동 중 1명 , 인동동 중 2명, 양포동 중 3명 등 총 8명이 증가된 595명으로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